

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2019년 2월 2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26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		
배포일시	2019. 2. 25.(월)	담당부서	생활제품안전과		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3-870-5450)	담당자	임미희 연구사(043-870-5460)		

안전하게 운동하자,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.
- 산업부(국표원), '야외 운동기구' 안전기준 마련하고 제품 안전확인신고 의무화 -

-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**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**하고 있는데, 이러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.
 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야외 운동기구를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**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**하고,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.
 - * (야외 운동기구 종류) 온몸역기올리기, 하늘걸기, 마라톤운동, 다리뺨치기, 자전거, 온몸노젓기, 몸통운동, 옆파도타기 등 (붙임2 참조)
 -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**햇빛, 눈,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**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, 목, 발 등 신체부위까지 기구에 끼이는 **유형의 안전사고**가 발생하고 있어서,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.
 - * (세부 안전기준(안)) 재료, 표면처리, 외형구조, 하중견딤, 신체끼임 방지 등 구조·설계 요건과 운동지침, 기구의 주요기능,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

-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,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**제품의 출고/통관(수입품일 경우)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·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, 제품에 구각 통합인증(KC)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**해야 한다.
- 산업통상자원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**2.27.부터 입법예고**했으며,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면,
 - 소비자들은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**안전사고를 예방**할 수 있고, 동시에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, 주요 기능,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**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**
 - 제조·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·수입하는 **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**하여, 안전성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되며,
 - 지방자치단체들도 **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구매하여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**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국장은 “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,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**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**할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임미희 연구사(☎ 043-870-54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야외 운동기구 제품 및 설치상 안전 문제 사례

	
<p>손가락 끼임 위험</p>	<p>부식되고 녹슴</p>
	
<p>회전식 발판 최소넓이 부적합</p>	<p>운동기구 매립기초부 노출</p>
	
<p>주변 설치물과의 안전거리 미확보</p>	<p>차도/보도 바로 옆에 운동기구 설치</p>

<그림> 야외 운동기구 제품 및 설치상 안전 문제 사례

붙임 2 야외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

야외용 운동기구 종류 및 형태



<그림> 야외용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 예시

: 온몸역기올리기, 하늘걷기, 마라톤운동, 다리뺨치기, 자전거, 온몸노젓기, 몸통운동, 옆파도타기 등